







보도참고자료



9.24(목) 14:00부터 보도가능

	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 금융개혁 현	변장점검반	
작성부서	금융위원회 금융현장지원단		
	금융감독원 금융혁신국	* 과제별 :	소관 연락처는 [붙임] 본문에 표기
책 임 자	김성조 팀 장 (2156-8003)	담 당 자	박경덕 사무관 (2156-8004)
	김정명 팀 장 (2156-9689)		김종식 사무관 (2156-8005)
	이성원 팀 장 (3145-8855)		장항필 선 임 (3145-8856)
	홍영기 부국장 (3145-8202)		최은희 선 임 (3145-8635)
배 포 일	2015.9.24.(목)	배포부서	대변인실(2156-9543~48) 공 보 실(3145-5789~9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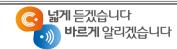
제목: 현장점검반 7월중(13~15주차) 건의사항 회신결과

* 보험 및 금융투자 권역 사례

- □ 금융위·금감원 합동 현장점검반은 13~15주차(6.29~7.17) 건의사항을 회신하였음
- '선물회사의 예탁증권 담보 신용공여 허용'은 수출입 제조업체 등이 환혜지 등을 목적으로 파생상품시장 거래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개선사항이며
- '보험사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담보제공 허용'은 영국 로이드 마켓 등 보험사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사항임
- □ 현장점검반은 앞으로도 우리 제조업체·금융회사의 애로사항과 해외 진출을 적극 도와주는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 추진 예정임



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http://www.fsc.go.kr



<첨부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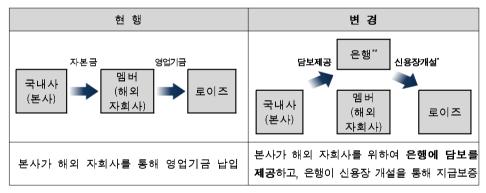
1. 선물회사의 예탁증권 담보 신용공여 허용 [금융투자]

☞ 금융위 자본시장과 김성준 사무관(2156-9876)

- □ (배경) 선물업 겸영 중권회사(투자매매·중개업자)는 예탁받은 중권을 담보로 투자자에게 금전융자(동 자금으로 파생상품 등 거래 가능)가 가능*
 - * 자본시장법시행령(제69조제1항제2호)
 - 제69조(신용공여) ①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자에게신용을 공여할 수 있다.
 - 2.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증권을 예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증권을 담보로 금전을 융자하는 방법
 - ※ 예탁증권 담보 신용공여: 투자매매·중개업자가 투자자의 예탁증권을 담보로 금전을 융자하는 것을 말함(금투업규정 제4-30조제1호다목). 이 경우 대출금의 사용은 특정 목적에 제한되지 않지만 담보증권 종류는 상장주권, 채권, 수익증권 등으로 한정
 - o 하지만, 전업 선물회사는 예탁증권을 담보로 한 금전용자가 가능한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환혜지 등이 필요한 기업의 파생상품 거래에 애로 발생
- □ (건의내용) 전업 선물회사도 예탁증권을 담보로 한 금전융자가 가능 하도록 명확히 할 필요
 - (☞ 해당사례는 금투협회 김중흥 실장(2003-9160)에게 질의하여 확인 가능)
- □ (수용내용) 현행 자본시장법시행령(제69조제1항제2호) 해석상 전업 선물회사도 예탁증권 담보 신용공여의 주체인 투자매매업자·중개업자에 포함되므로 예탁증권 담보 금전용자가 가능
- □ (기대효과) 수출입 제조업체 등이 환혜지, 원자재가격 혜지 등을 목적으로 파생상품 거래가 필요한 경우 금전용자를 받은 자금을 파생상품 거래시 증거금 등으로 사용 가능
 - 또한, 기관투자자 등의 경우도 동 금전융자 자금을 파생상품 거래시 일일정산 등으로 활용 가능하여 파생상품 거래의 편리성 제고
 - * 기관투자자 등의 경우 증권회사는 KOSPI 선물·옵션를 위해 사용하며, 선물회사는 통화선물, 채권선물 등을 위해 주로 사용

- 2. 보험사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담보제공 허용 [보험]
 - ☞ 금융위 보험과 임형준 사무관(2156-9832)
- □ (배경) 보험사가 해외 자회사를 통해 영국 로이즈* 마켓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보험금 지급에 대비하여 로이즈에 영업기금을 납입해야 함
 - * 로이즈 : 세계 최초 보험조합으로 개별 보험업자들이 모인 하나의 보험시장, 300년 이상의 역사를 통해 축적한 노하우를 통해 개인물건에서 복잡한 스폐셜티 보험까지 다양한 보험종목을 취급하며 재보험 비중은 30%대임
 - 영업기금 납입을 **현지 은행의 신용장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**, 이 때 **현지 은행은** 신용장 개설시 **국내 보험사의 담보제공을 요구**
 - 그러나, 보험업법령에 따르면 보험사는 해외 자회사를 위한 채무 보증은 가능하나 담보제공은 불가능

<해외 자회사에 대한 담보제공 허용시 은행의 신용장 활용>



- * 신용장 : 발행은행이 의뢰인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고, 수익자에게 의뢰인에 대한 신용을 대신 보증하는 증서
- ** 로이즈에서 지정하는 현지 해외 은행
- □ (건의내용) 담보제공과 채무보증은 실질이 동일하므로 외국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회사에 대해 채무보증 뿐 아니라 담보제공도 허용
 - (☞ 해당사례는 코리안리 김기홍 과장(3702-6030)에게 질의하여 확인 가능)

- □ (수용내용) 보험회사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해외 자회사에 대한 채무 보증을 허용하고 있으며, 해외 은행의 신용장 개설을 위한 담보제공 또한 같은 취지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관련 법령 개정 추진*
 - * 2015년 4분기 중 추진
- o 다만, 회사의 재무건전성 등을 해치지 않도록 담보제공의 목적 및 한도 등을 법령에 명확히 기재할 필요
- □ (기대효과) 해외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영업기금 납입을 위한 대규모 자본금의 유출 없이 추진 가능하여 해외 자회사 설립시 불확실성 해소 함으로써 보험사의 해외진출을 지원
- 로이즈 마켓에 용이하게 진출함으로써 해외 로이즈 멤버 등으로부터 선진 언더라이팅 기법 등 노하우 전수가 가능